

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

보내는 사람

□□□□□

우체국

요금후납

받는 사람

□□□□□

즉결심판출석통지서

통지서번호 :

교통범칙금 미납자		생년월일	
즉결심판예정일		즉결심판소	
위 일시·장소는 예정사항으로,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화·우편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일과 장소를 확정하기 바랍니다.			
범칙금등 납부기한		범칙금등	원
위 반 사 항	위반일시		
	위반장소		
	위반내용		
	범칙금	원	범칙금통고서 번호

- ☐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.
- ☐ 귀하께서 원할 경우 「도로교통법」 제165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☐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·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
- ☐ 귀하께서 위 범칙금등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거나,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는 물론,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에 따라 면허정지(40일)를 받게 되며,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라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누산점수에 산입되어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☐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 (000-000-0000)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경찰서장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범칙금등 영수증(납부자용)

통지서번호	
회 계	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
세입징수관서	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
계좌번호	
납부금액	
납부기한	
납부자	
생년월일	

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은행 지점(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)

수납자인

취급점영수인

- ※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.

통고서번호		회 계	
계좌번호		세입징수관서	
납부금액		납부기한	
납부자		생년월일	

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

년 월 일

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은행(우체국) (수납인)

210mm×297mm(백상지 60g/㎡)